

서울특별시 강남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 
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 연 희 인

2015년 7월 10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784호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폐지규칙

서울특별시 강남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### 1. 개정이유

강남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의 탈세제보 포상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 138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,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의 근거법령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삭제, 구 지방세법 제67조의 지방세법 제110조 제2항으로 조문이동 등으로 동 규칙의 존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강남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의 탈세제보 포상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 138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어, 해당 규칙의 존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함